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 분야 의제 및 국제협약의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 해양수산

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항 중 “직급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평택항·당진항”을 “평택·당진항”으로 하고, 같은 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중 “장항항·평택항 및 당진항”을 “장항항 및 평택·당진항”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5”를 “598”로, 일반직 계 “591”을 “594”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196”을 “197”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9”를 “31”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1”을 “604”로, 일반직 계 “597”을 “600”으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207”을 “208”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3”을 “35”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8”을 각각 “305”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및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0”을 각각 “79”로,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7”을 “56”으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8”을 각각 “305”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1”을 “80”으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9”를 “78”로,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7”을 “56”으로 한다.

별표 1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3”을 각각 “251”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80”을 “79”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7”을 “76”으로 한다.

별표 2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3”을 각각 “251”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79”를 “78”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8”을 “77”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6”을 각각 “883”으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9”를 “168”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20”을 “319”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8”을 “107”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7”을 각각 “884”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6”을 “165”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17”을 “316”으로,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00”을 “99”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2”를 각각 “1,254”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2”를 “101”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9”를 “40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5”를 “342”로, 행정서기·시설

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23”을 “222”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6”을 각각 “1,258”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8”을 “107”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0”을 “40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60”을 “357”로,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4”를 “213”으로 한다.

별표 2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를 각각 “76”으로,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을 “17”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9”를 “11”로,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7”을 “6”으로 한다.

별표 3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illegible]

부에 둔다.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④ ----- ----- ----- 2026년 12월 31일----- -----.
⑤ ~ ⑨ 삭제	
⑩·⑪ (생략)	⑩·⑪ (현행과 같음)
⑫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둔다.	<삭제>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⑭ ----- ----- ----- 2026년 12월 31일----- -----.
⑮ ~ ⑳ (생략)	⑮ ~ ⑳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95	598	+3
일반직 계	591	594	+3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6	197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29</u> ·	<u>31</u> ·	+2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601</u>	<u>604</u>	+3
·	·	·	
·	·	·	
일반직 계	<u>597</u>	<u>600</u>	+3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07</u>	<u>208</u>	+1
·	·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33</u> ·	<u>35</u> ·	+2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8</u>	<u>305</u>	-3
일반직 계	<u>308</u>	<u>305</u>	-3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80</u>	<u>79</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80</u>	<u>79</u>	-1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 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7</u>	<u>5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8</u>	<u>305</u>	-3
일반직 계	<u>308</u>	<u>305</u>	-3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81</u>	<u>80</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9</u>	<u>78</u>	-1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 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7</u>	<u>5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9]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53</u>	<u>251</u>	-2
일반직 계	<u>253</u>	<u>251</u>	-2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 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80</u>	<u>79</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 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 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7</u>	<u>76</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53</u>	<u>251</u>	-2
일반직 계	<u>253</u>	<u>251</u>	-2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 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79</u>	<u>78</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 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 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8</u>	<u>77</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886</u>	<u>883</u>	-3
일반직 계	<u>886</u>	<u>883</u>	-3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69</u>	<u>168</u>	-1
·	·	·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320</u>	<u>319</u>	-1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08</u>	<u>107</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87</u>	<u>884</u>	-3
일반직 계	<u>887</u>	<u>884</u>	-3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u>166</u>	<u>165</u>	-1
·	·	·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317</u>	<u>316</u>	-1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 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00</u>	<u>99</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62</u>	<u>1,254</u>	-8
일반직 계	<u>1,262</u>	<u>1,254</u>	-8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2</u>	<u>101</u>	-1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 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09</u>	<u>406</u>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5</u>	<u>342</u>	-3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 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재안 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223</u>	<u>222</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66</u>	<u>1,258</u>	-8
일반직 계	<u>1,266</u>	<u>1,258</u>	-8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8</u>	<u>107</u>	-1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 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0</u>	<u>407</u>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60</u>	<u>357</u>	-3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 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 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214</u>	<u>213</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4</u>	<u>76</u>	+2
일반직 계	<u>74</u>	<u>76</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u>16</u>	<u>17</u>	+1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9</u>	<u>11</u>	+2
·	·	·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u>7</u>	<u>6</u>	-1
·	·	·	
·	·	·	